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 목 차 】

I . 개관	1
1. 조직 및 정원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3
4. 재무결산	6
가. 재정상태	6
나. 재정운영	8
다. 순자산변동	9
II . 검토의견	10
◆ 총괄적 검토 ◆	10
1.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10
가. 결산개요	10
나. 행정직원 정원확대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필요	11
다. 검사 및 수사관의 적극적인 총원 방안 마련 필요	16
2.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 성과 제고 필요 등	19
가. 결산개요	19
나.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21
다. 외부 회의장 임차를 통한 회의개최 지양 필요	27
◆ 개별사업별 검토 ◆	29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29
가. 결산개요	29
나.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 필요	29
다.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5
라. 내부고발제도 실질화를 위한 노력 필요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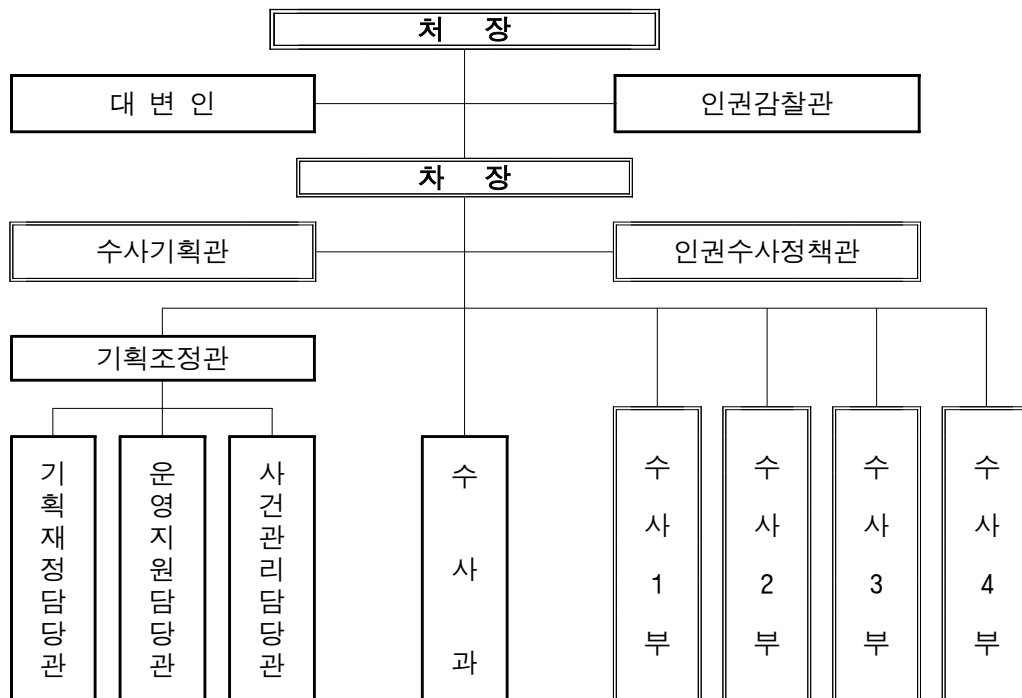
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7011-200)	43
가. 결산개요	43
나. 고용부담금의 예산 적시 반영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43
5.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01)	50
가. 결산개요	50
나.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노력 필요	50
다.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 철저 필요	53
【참고자료】 2022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치결과	58

I. 개 관

1. 조직 및 정원

-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공수처는 4관 4부 5과로 구성되고 별도의 소속기관은 없으며, 정원 85명 현원 77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도 (2024.7.31.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원 및 현원 현황(2024.7.31.기준)〉

구분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처·차장 제외)	수사처수사관	행정직원	계
정원	1	1	23	40	20	85
현원	1	1	18	37	20	77

2.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311	134	—	43.1%		177

□ 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세입예산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3억 1,100만원임. 총 수납액은 1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43.1%이며, 미수납액은 1억 7,700원임.

–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반납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59-596)과 수사관 채용 응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사건기록열람등사 수수료 등 기타 잡수익(69-691)임.

–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공수처 재임용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반납(기한 미도래)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59-596)임.

【 2023년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징수결정액(A)	수납액(B)	B/A(%)	
기타경상이전수입	-	141	310	133	42.9	-
기타잡수입	3	2	1	1	100	-
총 계	3	143	311	134	43.1	-

3.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증·감 (△)액				
17,683	17,683	1,633	-	-	19,316	17,084	-	2,232

□ 2023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93억 1,600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4%인 170억 8,4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6%인 22억 3,200만원임.

□ 지출액 170억 8,400만원을 살펴보면,

공수처 운영 인건비와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110억 8,8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 중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정보화체계구축및운영: 25억 8,200만원 (15.1%)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 20억 1,700만원 (11.8%)
- 수사지원및수사일반: 13억 8,800만원 (8.1%)
- 공판활동 지원: 900만원 (0.1%)
- 공수처 운영 인건비: 71억 1,100만원 (41.6%)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39억 7,700만원 (23.3%)

□ 불용액 22억 3,200만원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 집행잔액 등으로 인건비 8억 5,900만원, 수사지원및수사일반 6억 2,700만원,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 800만원,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6억 8,500만원, 정보화체계구축및운영 900만원, 공판활동 지원 4,400만원이 각각 불용됨.

【 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 A)	
		본예산	추경(A)			
총 계	14,366	17,683	17,683	15,461	87.4	20,680
1000 공수처 활동 계	4,670	5,118	5,118	4,432	86.6	7,930
1001 공수처 업무정보화 계	3,427	3,095	3,095	3,079	99.5	6,181
정보화체계 구축및운영 (1001-300)	1,153	1,925	1,925	1,916	99.5	3,851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001-301)	2,274	1,170	1,170	1,163	99.4	2,330
101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계	1,181	1,970	1,970	1,344	68.2	1,719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1,181	1,970	1,970	1,344	68.2	1,719
1012 공판활동 계	62	53	53	9	17.0	30
공판활동지원 (1012-301)	62	53	53	9	17.0	30

구분	2022결산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7000 행정지원 계	9,696	12,565	12,565	11,029	87.8	12,750
7001 소속기관 인건비 계	6,384	8,161	8,161	7,111	87.1	8,381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6,384	8,161	8,161	7,111	87.1	8,381
7011기본경비 계	3,312	4,404	4,404	3,918	89.0	4,369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총액 (7011-200)	1,588	1,707	1,707	1,829	107.1	1,818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7011-201)	1,724	2,697	2,697	2,089	77.5	2,551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A)	2022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13,286	13,930	(644)	(4.6 %)
부 채	23	116	(93)	(80.2 %)
순자산	13,263	13,813	(550)	(4.0 %)

□ 2023회계연도말 자산은 132억 8,6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 대비 6억 4,400만원 감소함.

- 유동자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국고예금 감소로 전기대비 1억 3,300만원 감소하였음. 미수채권은 미수기타수익 증가로 전기대비 1억 7,700만원 증가함. 기타유동자산은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선급금이 9억 7,900만원 증가하고 선급비용이 8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9억 7,100만원 증가함.
- 투자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 증가로 전기대비 6,100만원 증가함.
- 일반유형자산 중 구축물은 신규 취득으로 2억 9,6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으로 2억 9,8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200만원 감소함. 기계장치, 집기 및 비품 등 기타의 유형자산은 신규 취득 등으로 5억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으로 7억 1,7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2억 1,700만원 감소함.

- 무형자산 중 내부개발소프트웨어 및 외부구입소프트웨어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10억 4,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무형자산상각 등으로 25억 4,4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15억원 감소함.

□ 2023회계연도말 부채는 2,3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말 대비 9,300만원 감소함.

-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기타의미지급금이 600만원 감소하고 관리용역비 등 기타의미지급비용이 8,700만원 감소하여 전기대비 9,300만원 감소함.

□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이 감소한 132억 6,300만원임.

나. 재정운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A)	2022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프로그램순원가 ¹⁾	6,454	3,885	2,569	66.1 %
II.관리운영비 ²⁾	12,183	10,709	1,474	13.8 %
III.비배분비용 ³⁾	-	-	-	-
IV.비배분수익 ⁴⁾	182	188	(6)	(3.2 %)
V.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8,455	14,406	4,049	28.1 %
VI.비교환수익 등 ⁵⁾	-	-	-	-
VII.재정운영결과 (V - VI)	18,455	14,406	4,049	28.1 %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84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4,900만원 증가함.

- 프로그램순원가 64억 5,400만원에서 관리운영비 121억 8,300만원을 가산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등 비배분수익 1억 8,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재정운영순원가는 184억 5,500만원임.

- 한편, 2023회계연도에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대비 25억 6,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외주용역비 16억 9,400만원 및 감가상각비 8억 8,700만원 증가 등이 반영된 것임.

1) 프로그램총원가(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사업비용에 해당함.

2)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함.

3)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임. 비배분비용의 예로는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손실,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4)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임. 비배분수익의 예로는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이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자금대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음.

5)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함.

다. 순자산변동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A)	2022년도(B)	증 감(A-B)	
			금 액	비 율
I.기초순자산	13,813	8,887	4,926	55.4 %
II.재정운영결과	18,455	14,406	4,049	28.1 %
III.재원의조달및이전	17,905	19,333	(1,428)	(7.4 %)
IV.조정항목	-	-	-	-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3,263	13,813	(550)	(4.0 %)

- 2023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은 138억 1,3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184억 5,500만원이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감소 및 무상 이전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4억 2,800만원 감소한 179억 500만원임.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 항목을 가산한 금액인 기말순자산은 132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 감소함.

II. 검토의견

◆ 총괄적 검토 ◆

1.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가. 결산개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인력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 기준 검사는 정원 25명에 현원 20명, 수사관은 정원 40명에 현원 37명, 행정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계
정원	25	40	20	85
현원	20	37	20	77
결원	△ 5	△ 3	—	△ 8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의 파견인력 현황을 보면, 2024년 4월 기준 수사인력 2명, 행정인력 20명 등 총 22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인력 현황〉

구분	파견기관	인원 수
수사인력(2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
행정인력 (20명)	중앙행정기관	2명
	지방자치단체	14명
	공공기관	4명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3년도 공수처의 보수(110-01)는 총 81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71억 1,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7.1%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수(110-01)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보수(110-01)	편성액	7,757	8,161
	집행액	6,340	7,111
	집행률(%)	82.2	87.1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나. 행정직원 정원확대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필요

- 현재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20명 이내”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행정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운영 중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2조(수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수사처수사관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원 중 1명(서기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행정안전부,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인사혁신처,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처장은 파견규모·직급·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별표 3] 직원 정원표(제12조제3항 본문 관련)

직원 정원표(제12조제3항 본문 관련)

총계	20
일반직 계	20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비서)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시설주사	2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기록연구사	1
전문경력관 나군	1

비고

1. 직원 정원 중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에 기록연구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기록연구사 1명을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으로 대체하거나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직원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 100명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 행정주사 1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 조직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회, 예산, 인사 업무 등 독립적인 행정 소요가 존재함에도, 타 수사기관과 비교할 때 검사정원 대비 검사의 인력 정원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의 수는 실제 소요대비 과부족할 것으로 보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청의 검사의 정원 비율 비교〉

기관**	검사정원	검사의인력 정원	검사대비 검사의 인력 비율
청주지검	38명	131명	3.45배
창원지검	43명	175명	4.07배
부천시청	43명	142명	3.30배
안양지청	34명	102명	3.00배
천안지청	35명	110명	3.14배
대구서부지청	35명	121명	3.45배
검찰청 전체	2292명	8453명	3.69배
공수처	25명	60명***	2.4배

*자료: 2023년 검찰연감

**지검 및 지청 자료는 일부만 무작위 기재하였음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기관의 기획·관리는 그 연속성을 위해 정원 내 직원이 담당하고 집행·실무는 파견자 등 정원 외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수처는 행정직원 정원 20명 중 처장 비서관 1명 및 간부 5명(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을 제외한 14명만 조직유지기능 실무에 투입될 수 있어 인사, 회계, 조직 등 안정적으로 기관을 유지

하기 위한 주요기능을 대부분 파견인력이 담당하는데, 파견인력은 파견기간 종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기관유지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큰 상황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조직기능의 담당 현황〉

단위업무	주요 세부 업무	담당자
인사	검사 인사	소속직원(행정6)
	수사관 인사	파견(지자체6)
	공무직 인사	파견(지자체6)
총무	물품관리(물품관리관)	소속직원(행정5)
	과 서무	파견(국가7)
회계	회계·계약(지출원)	파견(지자체5)
	급여·복지후생	소속직원(행정6)
조직	직제·조직진단	파견(지자체5)
정보화	정보화 총괄	파견(전산6)
	KICS 총괄	소속직원(전산6)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에 따라 2022년도에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역량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는 조직·인사·회계 등 기관유지의 핵심기능 업무 담당자를 정원 내 인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직원의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

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⁷⁾된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인하여 모두 폐기되었고, 이후 제22대 국회에서는 행정직원의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876호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 종합하면, 공수처는 기관유지를 위한 핵심업무를 정원 내 인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공수처 소속 행정직원과 파견공무원간 적절한 부서배치를 통해 행정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기관유지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의안번호 제2110857호 이수진의원안, 의안번호 제2111515호 송기헌의원안, 의안번호 제2118489호 권인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124336호 권칠승의원안, 의안번호 제2124664호 소병철의원안

다. 검사 및 수사관의 적극적인 충원 방안 마련 필요

-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정원은 25명인데 24년 7월 기준 현원은 20명으로 결원이 총 5명에 달하였음.

공수처법 제8조⁸⁾에 따라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임. 그런데 공수처 최초 출범 당시 검사로 임용되었던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은 임기만료 전 퇴직하였고, 2명 중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에 실패하였는바, 결과적으로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연임하여 연임 비율은 7.7%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재직 중인 검사 20명의 재직기간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3년 이상 재직자 수는 1명이고, 2년 이상 재직자 수도 도합 6명으로 공수처 출범(2021년 1월 21일) 후 약 3년 5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 중 2년 이상 재직자 비율이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수사관의 경우 임기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인데, 현원 36명 중 2년 이상 재직 수사관 수는 23명으로 64.9%였고, 최근 3년간 퇴직자 수는 총 15명으로 연평균 5명에 달하였음.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재직기간별 인원수〉

(단위: 명)

구분	0 ~ 1년	1 ~ 2년	2 ~ 3년	3년 이상	합계
검사	8	6	5	1	20
수사관	2	11	13	10	36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근 3년간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퇴직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검사	채용인원	21	3	10	0	34
	퇴직인원	0	5	7	4	16
수사관	채용인원	33	12	3	1	49
	퇴직인원	0	8	3	4	15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와 같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이 높을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어 수사 효율성이 낮아지고, 잦은 인력 공백은 조직 운영을 불안정하게 함.

- 검사 및 수사관의 높은 퇴직률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수처의 검사 및 수사관의 경우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과는 달리 임기제로 운영되고, 특히 검사는 연임이 3회로 제한되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음.

공수처의 설명과 같이, 검찰청 검사의 경우 「검찰청법」 제39조⁹⁾

9)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에 따라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을 뿐 별도의 연임제한은 없는 반면, 수사처검사의 경우 최대 9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 불안이 높은 퇴직율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임.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사처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115호 김의겸의원 대표발의)¹⁰⁾이 발의된 바 있음.

다만, 퇴직한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의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고문을 게재한 사례¹¹⁾ 및 높은 퇴직률에도 연임심사를 받은 2명의 검사 중 1명이 부적격판단을 받아 인력 공백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임제한 외에도 채용 또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검사의 퇴직률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의 연임제한 규정 개정 등 수사처검사의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불안 해소책을 마련 및 추진함과 동시에, 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기준 및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운영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줄여야 할 것임.

10) 현재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됨.

11) 법률신문,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 2023.11.30.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632>

2.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 성과 제고 필요 등

가. 결산개요

- 공수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각종 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2023년 공수처는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감찰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공소와 관련하여 공소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였음.

〈공수처 산하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운영근거	위원 수 (내부위원)	소집요건	심의대상	비고
수 사 심 의 위원회	「공수처 수사심 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 처예규)」	10명 이상	처장의 요청	①직접수사 개시 여부, ②국민적 의혹이 제기 된 사건 등의 수사방 향, ③구속영장 청구 여부, ④처장의 이첩요 청 여부	
수사자문단	「공수처 수사자 문단 운영에 관 한 지침(공수처 예규)」	10명 이상	처장의 요청	①국민적 의혹이 제기 된 사건 등의 처리과 정에서 수사의 적정 성·적법성, ②강제수 사의 필요성 및 방식	2024. 1. 25. 폐지
영 장 심 의 위원회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¹²⁾	9명	사법경찰 관의 심의 신청	①체포·구속영장, ②압 수·수색·검증 영장, ③통 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위원회명	운영근거	위원 수 (내부위원)	소집요건	심의대상	비고
공 보 심 의 위원회	「공수처 사건공 보 준칙(공수처 훈령)」	15인 이하 (과반 미만)	-	①공소제기한 사건, ② 공소제기요구한 사건, ③불기소 등 사건, ④ 수사종결 전 사건	
감찰위원회	「공수처 감찰위 원회 운영 규정 (공수처훈령)」	5~9명 (2명)	위원장 요 청 또는 처 장이나 재 적위원 1/3 이상 요청	①감찰업무의 기본방 향·계획, ②인권감찰 관이 회부한 중요 감 찰사건에 필요한 조치, ③비위행위 조치기준 및 처리절차	
내 부 고 발 자 구 조 심 의위원회	「고위공직자범 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 정(대통령령)」	5명 (2명)	위원장 요청	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②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공 소 심 의 위원회	「공수처 공소심 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 처예규)」	10명 이상	처장의 요청	①공소제기 여부 또 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②기소 여부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사 실적 쟁점, ③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된 사 건의 수사 적정성·적 법성, ④무죄판결 등에 대한 상소 여부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나.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 2023년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등 수사 관련 6개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경비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사업에, 공소심의위원회 경비는 “공판활동지원 (1012-301)”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음.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내 6개 수사 관련 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예산
수사심의위원회	49,500
수사자문단	67,500
영장심의위원회	40,500
공보심의위원회	66,000
감찰위원회	4,200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6,300
소계	234,00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판활동지원 사업 내 공소심의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예산
공소심의위원회	47,925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그런데 수사·공소관련 각 위원회의 2023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감찰위원회를 제외한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및 공소심의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률이 20% 미만이었고, 특히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및 공소심의위원회의 집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공수처 운영 각 위원회 및 자문단 등의 참석수당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위원회명	구분	2022	2023	2024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수사심의위원회	편성액	49,500	49,500	편성액: 59,865 집행액: 6,590 집행률: 11% *수사심의: 2,790 감사징계: 800 공보심의: 2,000 감찰: 1,000
		집행액	5,400	7,966	
		집행률(%)	10.9	16.1	
	수사자문단	편성액	67,500	67,500	
		집행액	6,000	7,600	
		집행률(%)	9.2	11.3	
	영장심의위원회	편성액	40,500	40,500	
		집행액	—	—	
		집행률(%)	—	—	
	공보심의위원회	편성액	66,000	66,000	
		집행액	4,966	5,300	
		집행률(%)	7.5	8.0	
	감찰위원회	편성액	4,200	4,200	
		집행액	2,800	2,200	
		집행률(%)	66.7	52.4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편성액	6,300	6,300	
		집행액	1,500	—	
		집행률(%)	23.8	—	
공판활동 지원 (1012-301)	공소심의위원회	편성액	48,000	47,925	10,600
		집행액	4,365	4,212	—
		집행률(%)	9.1	8.8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러한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되어 영장심의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 기준 단 한 건의 회의도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2024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및 공판활동 지원 사업의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총 7,046만원 중 집행액이 659만원에 그치는 등 집행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참석수당의 집행부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첫째, 각 위원회 예상개최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각 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률 저조의 원인은 편성 시 예측하였던 개최횟수와 실제 개최횟수간 차이에 기인함.

〈수사·공소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단위: 회)

구분		수사심의 위원회	수사 자문단	영장심의 위원회	공보심의 위원회	감찰 위원회	내부고발자 구조심의위	공소심의 위원회
구성시기		2021.6.	2021.6.	2021.6.	2021.9.	2022.9.	2021.7.	2021.6.
2021년	계획	68	30	—	—	—	—	68
	실적	1	1	1	6	—	1	2
2022년	본예산	27	27	27	27	2	6	16
	추경*	15	15	15	20	2	7	16
	실적	5	4	—	5	2	1	3
2023년	계획	15	15	15	20	2	7	14
	실적	3	3	1	5	2	0	2

* 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하여 예산을 삭감조정함.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년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실제 개최횟수가 예상과 부합한 위원회는 감찰위원회뿐이었으며, 그 외 모든 위원회는 계획대비 개최횟수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특히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1년간 15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촉식 회의 한 건만이 개최되었음.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회의개최 실적 추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편성 시 참석수당 예산이 과다하지 않도록 예상 개최횟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관계 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2023년도에 위촉식을 위한 한 건의 회의만이 개최되었음. 영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원인은 다음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영장심의위원회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일반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임. 그런데 공수처법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게 수사권 또는 기소권이 있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검찰청 검사와 수사처검사 중 누구에게 영장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간 협의한 바도 없어 공수처 출범 후 현재까지 사법경찰관이 검찰청 검사가 아닌 수사처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조(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수사처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포·구속영장
2. 압수·수색·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따라서,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련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영장 신청을 어느 기관 검사에게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관계 수사기관과 영장 신청 기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수처에게 수사권 또는 기소권이 있는 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영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수처는 관련 수사기관과 영장 신청과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의 집행실적을 제고하되, 이후 예산 편성 시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예산은 실적에 맞게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는 범죄와 관련한 영장의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하도록 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련 수사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인바, 동 협의 등을 통해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외부 회의장 임차를 통한 회의개최 지양 필요

-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자문위원회의 2023년도 회의개최내역을 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4월 26일, 수사자문단은 4월 6일, 자문위원회는 7월 11일에 공수처 회의실이 아닌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음.

〈연도별 공수처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명, %)

위원회명	일자	장소	참석계획 (A)		참석실적 (B)		참석률 (B/A)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수사심의위원회	3.21.	공수처 대회의실	20	—	10	—	50	—
	4.26.	P호텔 강남점	20	—	12	—	60	—
	7. 3.	공수처 중회의실	20	—	15	—	75	—
수사자문단	4. 6.	P호텔 강남점	20	—	11	—	55	—
	6.26.	공수처 중회의실	21	—	16	—	76	—
	9.25.	공수처 중회의실	21	—	10	—	48	—
자문위원회	4.21.	공수처 대회의실	20	—	13	—	65	—
	7.11.	AT센터	26	—	15	—	58	—
	9. 7.	공수처 중회의실	6	—	6	—	100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외부 호텔 등의 장소를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장소대여료 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등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집행될 우려가 있고,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회의장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³⁾ 각 위원회를 외부회의장에서 개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외부위원의 회의참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 확보 및 장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서울에 위치한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입장이나, 공수처는 수도권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하여 공수처 내 회의장의 장소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 소관 각 위원회의 개최횟수가 많지 않아 공수처 청사 내 회의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 기준 실제 민간위원의 계획인원 대비 참석인원 비율을 보면, 공수처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평균 69%, 외부 회의장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평균 58%의 참석률로 공수처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 회의의 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¹⁴⁾을 고려할 때,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 내 회의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결론적으로, 이후 공수처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회의장 임차보다는 공수처 자체 회의장을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13)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 5.

14) 다만, 공수처는 외부회의장 회의개최 당일 악천후로 인하여 참석율이 낮았다는 입장임.

◆ 개별사업별 검토 ◆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가. 결산개요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1011-301)은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역량의 강화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19억 7,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이월예산 45억원을 포함하여 20억 1,500만원이며, 이 중 13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억 2,700만원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970	45	—	—	2,015	1,388	—	627

나.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 필요

- 공수처는 2022년 6월에 민원소통전문관을 위촉하였고, 2023년 11월 까지 민원소통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월 평균 약 150만원의 활동비를 해당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로 지급하였음.

〈 2023년 민원소통전문관 활동비 집행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세목	지급월	지급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수용비	1월	1,430,020
		2월	1,459,200
		3월	1,605,120
		4월	1,386,240
		5월	1,459,200
		6월	1,532,160
		7월	1,532,160
		8월	1,605,120
		9월	1,386,240
		10월	1,386,240
		11월	133,760
		총계	14,915,46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민원소통전문관은 공수처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종합민원실이 개소됨에 따라 민원처리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위촉한 것으로, 제도 개요 및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음.

〈공수처 민원소통전문관 제도 개요〉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1조
직무	민원인 상담, 기처리 민원에 대한 이의제기 시 관련서류 검토 후 민원인에게 설명 또는 의견 개진 등
근무시간	주 5일, 일 5시간 근무(주 25시간)
유사사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상담 등을 위해 민원상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주 5일, 1일 8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과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1조(민원소통 전문관의 운영) ① 민원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민원소통 전문관의 근무형태·보수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민원소통 전문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민원소통전문관은 주 5일, 일 5시간 근무를 하며 민원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일당 8만원을 수령 하였는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고용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공수처 민원소통전문관은 형식상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하며, 업무의 대가로 월단

위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갑이 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후에는 을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55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다시 3년 뒤 을 자치단체가 갑에 대한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자 갑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재위촉 이후 갑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갑

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을 자치단체는 갑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갑으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갑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에 을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을 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을 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따라서, 민원소통전문관에게 지급될 수당 등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민원소통전문관 보수를 인건비(110) 비목에 편성하였어야 하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민원소통전문관에 대한 보수지급을 위한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2023년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를 민원소통전문관 예산으로 지속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한편, 민원소통전문관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보험료 등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공수처는 민원소통전문관 운영 중 고용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¹⁵⁾ 2023년 11월에 민원소통전문관 위촉을 종료하였음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15) 유사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위원의 경우 매년 고용부담금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¹⁶⁾ 근로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수처는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수처 출범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수용비 330만원, 임차료 745만원 등 총 1,075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공동학술대회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세목	용도	집행액
2023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수용비	광고료	297
			기념품 등	3,000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임차료	학술대회장 임차	7,452
	총계			10,749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공수처 출범 2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기관운영 또는 사업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예산편성과 심의가 없었음에도 공수처 출범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은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민원소통전문관의 경우 2023년 11월 2일자로 위촉을 종료하였고, 학술대회 개최 예산의 경우 2024년 예산부터 반영하는 등 개선하였다는 입장인바, 추후 공수처는 예산편성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2023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총 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3,600만원으로 집행률이 35.6%에 불과하였고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01	—	—	—	101	36	—	65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는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지급 예산의 집행이 부진

하였기 때문인바, 공수처는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명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용도로 집행한 금액은 160만원으로 실효행률이 3%에 불과하였음.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75,000	1,000	54,000	1,609	3,600	108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예산편성 당시 산정기준을 민원전화 1통당 요금으로 환산하여 계상하였으나, 실제 제도운용 시 인터넷회선 이용 민원 처리가 많아짐으로써 공공요금 소요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통합민원 콜센터는 2022년 5월부터 운영되었고, 2022년도에도 편성된 공공요금 예산 7,500만원 중 집행액이 100만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공공요금의 실제 소요는 이미 파악되었다고 보여짐.

그럼에도 공수처는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명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한 후 대부분 불용하였는바, 이는 불필요한 예산 불용으로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한 것으로 부적절한 사업관리로 사료됨.

따라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라. 내부고발제도 실질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공수처법」 제46조제2항은 공수처가 각 기관 등의 내부고발자¹⁷⁾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신변안전조치, 제8조에서는 포상금, 제9조에서는 구조금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공수처 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서는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포상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지급기준을 규정¹⁸⁾하고 있음.

17) 내부고발자의 정의는 「공수처법」이나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수처 고시인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함.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18)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장 신변안전조치 : 제15조(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제16조(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제5장 포상금: 제2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1조(포상금의 신청), 제22조(의견청취)

제6장 구조금: 제23조(구조금의 지급 항목), 제24조(구조금의 신청), 제25조(구조대상가액 등), 제26조(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관련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처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안전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과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
2. 제4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해제된 사실
3.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 5. (생략)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구조금)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처장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④ 처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1011-301) 중 일반수용비(210-01)에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로 600만원 및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참석수당으로 630만원을, 포상금(310-03)에 내부고발자 포상금, 치료비, 이사비 등 총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2023년에는 한 건도 집행되지 아니하였음.

〈2023년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집행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일반수용비 (210-01목)	특정범죄신고 자, 증인, 내부 고발자 등 신변 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	200,000원*30회	6,000	—
		내부고발자구조 심의위원회 회 의참석수당	3명*7회*300,000원	6,300	—
	포상금 (310-03목)	내부고발자 포상금, 치료 비, 이사비 등	포상금 45,000 구조금 10,000	55,00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의 집행이 부진한 1차적인 원인은 고위 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임.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이루어진 내부고발 건 수는 총 2건이었고, 이 중 구조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음.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증거인멸 또는 내부통제가 용이하여 수사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자로부터 수사의 단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 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직사회 내부고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년 7월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하여 주요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하였고,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제화 연구용역 실시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수처의 내부고발 안내서 발간은 1회성이어서 2023년에는 내부고발 안내서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위공직자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에 대한 별도의 홍보도 이루어진 바가 없어 내부고발이 쉽게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수처는 홍보·교육·고발자보호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공수처와 유사하게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조치를 두고 있는 법무부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바, 해당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통합하여 홍보·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2023년 법무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지원 관련 홍보 예산내역〉

사업명	내역	예산액(천원)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335-30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지원 관련 홍보 동영상 등 제작	44,500

*자료: 법무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교육 예산내역〉

사업명	내역	예산액(천원)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5)	공공, 민간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20,000
	업무매뉴얼,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	9,923
	합계	29,92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7011-200)

가. 결산개요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7011-200)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임.

2023년도 예산액은 17억 700만원이고 이·전용 1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8억 9,800만원이며, 이 중 18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900만원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707	—	191	—	1,898	1,829	—	69

나. 고용부담금의 예산 적시 반영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공수처는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에 공무원 근로자 고용 및 유지를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공무원 근로자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32명임.

〈매 연도말 기준 공수처 공무직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원	25	35	35	38
현원	23	35	32	35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매 연도별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퇴직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27명, 2022년에 20명, 2023년에 2명을 각각 채용하였고, 퇴직인원은 2021년 4명, 2022년 8명, 2023년 4명임.

〈최근 3년간 공수처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퇴직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용	27	22	2	5
퇴직	4	8	4	2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22년 5월 27일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¹⁹⁾하였고,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에 7,438만원, 2023년에 1억 7,398만원의 적립금을 고용부담금(320-09)에서 납부하였음.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 적립금 납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세목	연도	집행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 (320-09)	2022년	74,382
		2023년	173,979
		총계	248,361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부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서면(이하 “재정검증결과 통보서”)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2024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퇴직연금사업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공수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를 14명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실제 가입대상자 30명²⁰⁾ 중 일부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서 중 일반현황〉

제도 설정일	납입 주기	법정 최소적립비율			결산연월	가입 자수	가입 기간 (전체)	평균임금 합계
		설정 전	설정 후	전체				
2022-05-27	년납	60.00%	100.00%	83.94%	2023년 12월	14명	2.66년	37,711,320원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 공수처의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임.

20)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2023년 회계연도말 당시 30명이었음.

첫째, 고용부담금을 실소요 대비 과소편성하여 예산의 전용이 발생하였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매 연도말을 기준으로 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²¹⁾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으로 명시²²⁾하였음.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공수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제9조(가입대상) ① 이 사업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2023년 최소적립금 산정 시 가입자 기준은 2023년 연도말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 근로자가 될 것인바, 2022년 채용되어 2023년 연도말까지 계속 근로중인 공무원 근로자는 전원이 최소적립금 산정을 위한 가입자 수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2022년 채용된 공무원근로자 20명 중 18명은 동년 6월까지 채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해당 인원 에 대한 적립금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2022년 공무원 근로자 채용내역〉

연번	채용일자	채용인원(명)	업무 등
1	2022.02.11.	10	사무보조
2	2022.02.11.	2	방호
3	2022.04.11.	2	방호
4	2022.05.09.	2	사무보조
5	2022.05.09.	1	방호
6	2022.06.07.	1	사진촬영
7	2022.11.28.	2	방호
합계		2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럼에도 공수처는 퇴직급여 적립금 납부금액을 예산편성 당시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고용부담금(320-09)을 과소편성함으로써 편성된 고용부담금 총액(1억 7,100만원)의 74.8%에 달하는 1억 2,800만원을 전용으로 조달하였는바, 이는 다른 사업 또는 비목의 예산부족을 초래하거나 국회의 예산심사 취

지와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고용부담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급여 적립금 납부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고용부담금(320-09)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업관리 소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자가 일부 누락되었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2023년 연도말 기준 공수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자 수는 30명에 달함에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재정검증은 가입자 14명을 기준으로 하는 등, 2024년 5월까지 일부 가입대상자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있는 공수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제10조제3항²³⁾을 위반한 것임.

또한, 퇴직급여의 법정 최소적립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수가 기초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일부 가입대상자가 누락된 상태로 재정검증이 이루어진 결과 현재기준 법정 최소적립금의 정확한 규

23) 공수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제10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③ 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반복·지속될 경우 법정 최소적립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곤란하고, 가입 누락 상태에서 공무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규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공수처는 누락된 가입대상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원을 포함한 법정 최소적립금을 조속히 산정하여 연말 납부하여야 할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미리 파악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01)

가. 결산개요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7011-201)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26억 9,700만원이고 이월예산 6,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억 6,400만원이며, 이 중 2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억 1,600만원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697	67	—	—	2,764	2,148	—	616

나.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노력 필요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천분의 36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공수처의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을 제외한 행정직원의 정원은 총 20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1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

사업	세목	연도(년)	납부액(원)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022	19,445,860
		2023	22,284,08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현재 행정직원 정원 20명을 모두 채용한 상태에서 장애인 추가 채용과 의무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공수처는 현재 수사처수사관 중 1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수사처수사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어서 의무고용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행정직원 인원은 법정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인력 대비 정원이 과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득이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정부기관이 법률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공수처는 추후 행정직원의 신규 채용 소요 발생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

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수처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해당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행정직원이 전원 채용 완료된 관계로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추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 철저 필요

-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현재까지 정부과천청사 5동을 공수처 청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의 경우 타 정부 기관 등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보안시설이 부재하여 수사기관 청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과천청사 5동 입주기관 현황〉

기관명	위치	면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하1층, 2층, 3층	4,080
서울지방교정청	5층, 6층	2,002
사행산업감독위원회	6층	910
경인지방통계청	지하1층, 1층, 7층	2,341
서울지방공정사무소	지하1층, 4층	1,727
서울지방국토청	지하1층	2,99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층	427
과천청사관리소	지하1층, 4층	1,017
기타기관	1층, 6층	665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정부청사 입주기관 현황” 재구성

- 이에 공수처는 지속적으로 신규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22년도 예산 심의 결과 청사 신축 사업비로 설계비 5억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되었음.

〈2022년 예산 각목명세서상 공수처 청사 신축 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내역	산출근거	금액
[2500] 공용재산취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531] 청사		
[3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420-01] 기본조사설계비		500,000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500,000,000원=	500,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재구성

- 공수처는 예산 반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청사 신축 사업의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완료기한을 2023년 5월로 하여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계약(계약금액 총 9,000만원)을 체결하였는데, 2022년 집행한 선금 6,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이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²⁴⁾에 따라 2023년도로 이월되었음.

당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공수처 청사 신축 사업의 기본계획 수

24)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립 용역 외에도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대응 또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와의 사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수처는 2023년 6월 8일 해당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24년 2월 10일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하였음. 그러나 이후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월의 경우 이미 이월된 예산을 재이월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항 후단²⁵⁾을 고려하면 변경된 계약기간에 따라 2024년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약채무의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2023년 12월 경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제1항²⁶⁾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① 기성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및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수처는 기성금(기성고 비율 88%, 7,738만원)에

2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도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철수비용(422만원)을 더한 8,160만원 중 선금으로 지급한 6,300만 원을 제외한 1,860만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였음.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계약 해지 정산금 내역〉

(단위: 원)

기간		계약금	1차기성 (70%)	2차기성 (18%)	용역타절 (자료증빙)	합계
인건비		64,920,497	45,444,000	11,685,000	2,380,000	59,509,000
경비	여비	825,000	577,500	148,500	—	726,000
	건축도면	10,000,000	7,000,000	1,800,000	1,200,000	10,000,000
	유인물비	800,000	560,000	144,000	96,000	800,000
	교통통신비	300,000	210,000	54,000	11,000	275,000
	자문비	1,800,000	—	—	—	—
소계		13,725,000	8,347,000	2,146,000	1,307,000	11,800,000
일반관리비 (4.03%)		3,172,685	2,170,000	557,000	148,000	2,875,000
부가세 (10.00%)		8,181,818	5,596,000	1,438,000	383,000	7,417,000
합계		90,000,000	61,557,000	15,826,000	4,218,000	81,601,000
정산금		81,601,000(정산금) - 63,000,000(기 지급금) =18,601,000(금회 기급분)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해당 사안의 경우, 계약관리 부실로 용역계약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사업의 일부 과업을 미달성하였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및 이월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됨.

공수처가 해당 용역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된 주요원인은 예산의 재이월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2024년 이후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임. 해당 규정을 계약변경 당시부터 고려하였다면 절차를 거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말로 조정하는 등 재이월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의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그럼에도 공수처는 이월예산의 재이월이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다음해로 연장함으로써 용역계약을 중단해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따라 ① 사업정적성재검토 대응이라는 계약의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② 기성고 분 외 271만원²⁷⁾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으며, ③ 이월예산 2,700만원 중 840만원이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따라서, 공수처는 이후 계약관리 부실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7) 2차 기성고에 포함되어야 할 건축도면 등을 제외한 인건비 및 부가세 비용임.

【참고자료】 2022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치결과

1.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	-	-	6	8	-	14

2.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 미이행	
12	2	-	14

3.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가. 조치완료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 [지적사항]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사업의 집행률이 51.9%에 불과하였고,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7011-201) 사업의 집행률도 68.0%에 불과한 등 집행이 저조하였음 ○ [지적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략목표의 달성률이 50%에 불과하여 성과가 저조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소관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 개선	○ '22년도 예산은 '21년 출범(예비비 편성)한 신설 기관으로 정확한 집행수요 예측 곤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수사 활동 위축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의 집행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 '23년도에는 예산 집행관리 개선계획 수립,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엄격히 관리한 결과, 집행률이 88.4%로 '22년에 비해 대폭 상승(11.2%p)하였음.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22) 51.9% → ('23) 68.9%(+17.0%) - 기본경비(비총액): ('22) 68.0% → ('23) 77.7%(9.7%) - 특히, '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간 집행실적, 국회 등 외부 지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구조 조정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노력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23) 20 → ('24) 17억원(△ 12.7%) - 기본경비(비총액): ('23) 28 → ('24) 26억원(△ 5.4%)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5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 [지적사항]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사업의 집행률이 51.9%에 불과하였고,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7011-201) 사업의 집행률도 68.0%에 불과한 등 집행이 저조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 개선	○ 수사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예비성 경비로 집행사유 발생 시 적극 집행하겠음 ○ 공수처는 독립적 수사기구로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1일
○ [지적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수사자문단 및 자문위원회 회의(각 1회, 약 200만원 집행, 기본경비 내 임차료 활용)를 개최하였는데, 수도권에 소재한 공수처 내 회의장에 대한 장소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산집행지침은 회의장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외부 회의장 임차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소관 위원회 회의를 외부 회의장에서 개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회의를 임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회의를 임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실시 -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회의장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 적극 활용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1일
○ [지적사항] 통합민원 콜센터는 당초 별도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내 공간을 배치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노력을 기울일 것	제도 개선	○ 통합민원콜센터 임차료 예산을 보증금 40백만원, 월 임차료 1.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과천 인근건물의 임차보증금이 과도하여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하여 과천청사 안내동에 입주하였음 * 보증금: 6백만원, 월 임차료: 10백만원 ○ 조치완료일 : '22년 4월 13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 [지적사항]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공수처 출범 2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기관운영 또는 사업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적절함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공동학술대회와 같이 편성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를 지양할 것	주의	○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한 공수처 출범 2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같이 편성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실시 - 예산 편성 목적 외 사업 추진 지양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0일
○ [지적사항] 민원소통전문관은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근무를 하며 업무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등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함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용부담금 납부 등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민원소통전문관은 위촉직으로 정부기관 위촉직의 경우 4대 보험 등 고용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다만, 다른 시정요구*에 따라 민원소통전문관 위촉을 '23.11.2. 종료하였으나 향후 재위촉시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 (10)예산 미반영사업의 추진 지양 필요 ○ 조치완료일 : '23년 11월 2일
○ [지적사항] 검사의 법복은 법정에서 착용하는 것으로 모든 공수처 검사에게 매년 새로 지급할 필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피복비의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불용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법복비를 포함한 피복비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할 것	제도 개선	○ 법복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임기 만료 예정 검사 인원을 감안하여 실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복비를 산정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 함 - 2024년 법복비 2,000천원으로 삭감 편성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 [지적사항] 민원소통전문관의 운영은 예산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를 위해 타 비목의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지출한 것은 부적절함 - 공수처는 민원소통 전문관 운영 수당 및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일반수용비(210-01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목)로 세목조정 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민원소통전문관 운영제도를 종료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23.11.2. 민원소통전문관 위촉을 종료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11월 2일
○ [지적사항] 2022년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및 공소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예산의 집행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위원회의 통합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 회의수요를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제도 개선	○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 통합 근거 마련('24.1.2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수사자문단 폐지) ○ 위원회의 실제 회의수요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 조정 (2024년도 예산 반영) - (수사 위원회) 234,000천원 → 59,865천원 - (공소 위원회) 47,925천원 → 10,600천원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25일
○ [지적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거나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숙직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일·숙직비가 전액 불용처리된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속히 당직근무를 위한 내규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당직을 실시할 것	제도 개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발령('24.1.15) - 당직 시행 완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23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 [지적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디지털포렌식 도구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인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개발과 관련한 효율성 분석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3건의 연구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긴급공고로 추진하고 단일 응찰에 의한 유찰 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편성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조치결과 -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편성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1일
○ [지적사항] 2022년 말 기준 공수처 검사의 경우 정원 25명에 현원 21명으로 4명의 검사가 부족하였고, 수사관의 경우 정원 40명에 현원은 38명으로 2명의 수사관이 부족하였는바, 2022년도 인건비 집행률이 82.1%로 저조하였음 - 직종별 연도 중 퇴직 및 임용 현황을 보면, 검사는 5명 퇴직에 3명이 임용되었고, 수사관은 8명 퇴직에 11명이 임용되어 퇴직에 따른 채용공고 기간 등 선발 절차를 고려할 때 인원 공백이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원활히 추진하여 인건비 불용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도 개선	○ 현재 검사 결원 2명(처·차장 제외), 수사관 결원 3명으로 해당 결원에 대한 채용전형이 진행중임 - 원활한 인력수급을 통해 인건비 불용 및 업무공백 방지에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나. 조치 중인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 [지적사항] 타 수사기관과 비교 시 검사정원 대비 검사의 인력 정원이 부족한 점, 행정직원 정원(20명)보다 많은 수의 파견공무원(23명)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공수처 사건처리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의 수가 실제 소요대비 부족한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행정직원의 정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소속 인원 및 파견공무원의 적절한 배치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제도 개선	○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산출한 공수처 적정인력을 토대로 자체 인력 증원안을 마련해 국회 등을 상대로 개정 필요성 지속 건의 - 적정인력 : 검사 40명(+15), 수사관 80명(+40), 행정인력 50명(+30) ○ 공수처 인력증원에 관한 의원입법 4건 법안심의 소위 상정, 2건 발의중 ※ 공수처 인력 증원 관련 법안 발의 및 상정 현황 - 상정(4건): 이수진의원안(수사관 40→50명, 행정직원 20→40명 증원), 송기현의원안(행정직원 20→60명 증원), 권인숙의원안(수사관 40→80명, 행정직원 20→50명 증원), 기동민의원안(검사 25→40명 증원) - 발의(2건): 권칠승의원안(차장 1명→2명, 행정직원 20→55명 증원), 소병철의원안(수사관 40→52명, 행정직원 20→50명 증원) ○ 21대 국회가 상반기 선거로 회기 내 입법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이며, 자동폐기 시 제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인력증원안 필요성 건의 및 입법활동 추진예정 ○ 조치예정일 : 입법활동 추진 중
○ [지적사항]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2차 사업을 위해 이월된 4억 2,200만원은 입찰 공고서상 납품기한이 1차 사업의 납품기한과 동일했다는 점, 2차 사업은 2023년도에 별도 예산을 편성받아 진행할 예정이었다는 점 및 이월 근거가 된 기존 입찰공고는 취소되고 2023년 5월에 다시금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함 ○ [지적사항] 소요예산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필요	주의	○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 '24년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593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전자증거 무결성 확보 및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대비하여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여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 조치예정일 : 2024년 10월 30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기존 사업추진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하고, 전자적 증거 보존관리시스템을 계획된 기한까지 차질없 이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